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9진정0100300 경찰의 부당한 위치추적으로 인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경찰서 112종합상황실)

주 문

경찰청장에게, 112문자신고에 따른 신고자 위치확인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없도록 전국 112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사례전파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위치추적 필요성 판단 및 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매뉴얼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8. 6. 21. 집에서 담배 냄새가 나서 112에 신고하였는데 당일 13:00경 피진정기관으로 부터 진정인의 위치를 추적한다는 휴대폰 문자를 받았다. 진정인은 112문자 신고를 하였을 뿐인데 경찰서에서 위치 추적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인은 2018. 6. 21. 07:30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주간지령업무를 지정받아 근무하던 중 같은 날 09:41경 ‘○○4동 노상방뇨 하는데 1명이라도 잡아주세요 10년 동안 순찰 강화만 하지 말고’라는 내용의 112문자신고(No.3873)가 접수되어 ○○지구대 순찰차 순35호 근무자에게 출동지령을 하였다. ○○지구대 순35호 근무자는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자에게 전화하였으나 받지 않는다고 무전보고 하였다. 이에 피진정인은 신고내용으로는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을 할 수 없어 2018. 6. 21. 09:43경 및 09:44경 신고자에 대한 제1차 및 제2차 위치정보조회를 하였다. 당시 신고자의 위치는 ○○구 ○○동으로 확인되었으나 CELL방식으로 정확한 장소를 확인할 수 없어 장소불명으로 1차 종결하였다.

이후 신고자는 같은 날 09:56경 ‘협박고소 한 거 범인 좀 잡아주세요. 형사한테 연락 없네요. 화분도난 당한거 지금이라도 잡아주세요. 가져가라고 써놓으라고만 하지 말고요.’라는 내용으로 재차 112문자신고(No. 3992)를 하여, 피진정인은 같은 날 10:04경 진정인에 대해 3차 위치정보조회를 하였고, 위치값이 반경 2km CELL 방식으로 재차 ○○구 ○○동으로 확인되어 ○○지구대 순35호 근무자에게 신고자와 통화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령하였다. ○○지구대 순35호 근무자는 신고자와 통화되었는데 장소가 ○○동 459-43호로 □□경찰서 관내로 확인되었다고 하며 □□경찰서로 이첩을 요청하였고, 피진정인은 같은 날 10:06경 □□경찰서로 112문자신고를 이첩 처리하였다. □□경찰서에서는 이미 같은 날 09:40경 신고자의 다른

112문자신고(No. 6861) 지령을 받고 □□경찰서 순65호 근무자가 처리 중이었으며, □□경찰서에서 해당 신고를 같이 종결 처리하였다.

피진정인은 위와 같은 내용이 긴급구조 혹은 신체·생명의 피해신고는 아니지만, 신고자의 위치가 정확하지 않고 불분명한 상황에서 긴급한 상황으로 확인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하고 있어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순찰차가 출동할 수 있도록 부득이 위치추적을 한 것으로 향후 신고처리 시 위치추적에 있어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피진정인 및 경찰청 관계자의 2회에 걸친 본 위원회 출석진술, 112신고사건처리표(No.3272 / No.3861 / No.3873), 피진정기관의 민원사건(무분별한 위치추적) 조사결과보고, 진정인에 대한 민원사건조사 결과회신, 사실정보조회에 대한 ○○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의 답변, 112 신고접수·지령 매뉴얼,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조사 등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8. 6. 21. 08:09경 '오늘 아침도 창문 여니 바로 담배냄새 들어오네요. 그래서 오늘도 창문 닫게 되네요. 윗집 밖에 없는 거 같은데요? ○○동 459-43 B03호, 살기 힘들어요 이집에서만 5년째예요'라는 내용으로 112문자신고(No. 3272)하였고, 이를 접수한 ○○지방경찰청은 진정인에게 '120번'으로 전화하여 흡연단속반에 신고하라고 안내하였다.

나. 진정인은 같은 날 09:40경 위 항 신고(No. 3272)와 관련하여 '다른 것 신고한 것도 범인을 안 잡아 주잖아요!!!! 담배 말고 지금 신고한 게 몇 건 인데요? 창문만 열면 냄새 풍기는지 누가 주시하면서 훑쳐보는 건지 잡아 달라고요 ○○4동 459-43 b03'라는 내용으로 112문자신고(No. 3861)하였고, 이를 접수한 ○○지방경찰청은 ○○□□경찰서에 지령하였으며, 동 경찰서는 순66호에 신고자의 주거지로 출동하도록 하였다. 순66호는 현장을 확인한 후 '신고자는 없고 신고자의 모친이 딸 때문에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며, 딸이 정신과 치료를 한 전력이 있으니 신고를 그렇게 해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해달라고 함'이라는 내용 및 '현장에는 보행자 및 거주자로 인한 흡연피해가 보이지 않는 공간'이라는 내용으로 해당 신고를 현장 종결 처리하였다.

다. 진정인은 같은 날 09:41 경 '○○4동만 오면 노상방뇨 하는데 1명이라도 잡아주세요 10년 동안 순찰 강화만 하지 말고'라는 내용으로 112문자신고(No. 3873)하였고, 이를 접수한 ○○지방경찰청은 진정인의 위치가 ○○대 기지국으로 확인되어 피진정기관인 ○○○○경찰서에 지령하였으며, 지령을 받은 피진정인은 ○○지구대 순35호에게 출동지령 하였다. 순35호는 해당 지령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신고자인 진정인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고, 진정인이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피진정인에게 무전보고 하였다.

라.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없어 같은 날 09:44경 2차례에 걸쳐 진정인의 위치정보 조회를 하였으나, 진정인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워, 순35호는 해당 신고를 '신고자는 전화를 받지 않고 신고

이력 확인한바 특이사항 없어 현장마감'이라는 내용으로 1차 종결하였다.

마. 진정인은 같은 날 09:56경 '협박고소 한 거 범인 좀 잡아주세요. 형사한테 연락 없네요. 화분도난 당한 거 지금이라도 잡아주세요. 가져가라고 써놓으라고만 하지 말고요'의 내용으로 112문자신고(No. 3992)하였고, 이를 접수한 ○○지방경찰청은 진정인의 위치가 ○○구 ○○1동으로 확인되어 ○○○○경찰서에 지령하였다. 해당 지령을 받은 피진정인은 같은 날 10:04경 진정인에 대한 제3차 위치정보를 조회하였고, 진정인의 위치가 ○○구 ○○동으로 확인되어 ○○지구대 순35호에게 진정인과 통화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령하였다. ○○지구대 순35호는 진정인과 통화한 후 진정인의 거주지를 ○○동 459-43으로 확인하여 관할인 ○○□□경찰서로 이첩을 요청하였고, 피진정인은 2018. 6. 21. 10:06경 ○○□□경찰서로 해당 신고를 이첩하였다.

바. 진정인이 112문자신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CODE가 분류되었다.

연번	신고시각	신고내용	code
1	2018. 6. 21. 08:09 경	오늘 아침도 창문 여니 바로 담배냄새 들어오네요. 그래서 오늘도 창문 닫게 되네요. 윗집 밖에 없는 거 같은데요? ○○동 459-43 B03호, 살기 힘들어요 이집에서만 5년째예요	code 4
2	2018. 6. 21. 09:40 경	다른 것 신고한 것도 범인을 안 잡아 주잖아요!!!! 담배 말고 지금 신고한 게 몇 건인데요? 창문만 열면 냄새 풍기는지 누가 주시하면서 훑쳐보는 건지 잡아달라고요 ○○4동 459-43 b03	code 2
3	2018. 6. 21. 09:41 경	○○4동만 오면 노상방뇨 하는데 1명이라도 잡아주세요 10년 동안 순찰 강화만 하지 말고	code 3
4	2018. 6. 21. 09:56 경	협박고소 한 거 범인 좀 잡아주세요. 형사한테 연락 없네요. 화분도난 당한 거 지금이라도 잡아주세요. 가져가라고 써놓으라고만 하지 말고요	연번2의 사건과 동일처리

< 112신고 CODE 별 처리 기준 >

code		분류기준	출동목표시간
긴급	code 0	코드1 중 이동범죄, 강력범죄 현행범 등의 경우	최단 시간 내
	code 1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임박, 진행 중, 직후인 경우 또는 현행범인 경우	최단 시간 내
비긴급	code 2	생명·신체에 대한 잠재적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범죄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급적 신속출동
	code 3	즉각적인 현장조치는 불필요하나 수사, 전문 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	당일 근무시간 내
비출동	code 4	긴급성이 없는 민원·상담 신고	타기관 연계

사. 본 진정사건 관련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112문자신고(SMS)에 대한 접수 및 처리방식은 다음과 같다.

1) 경찰청은 언어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 외국인 등 음성신고가 어려운 경우 또는 전화로 신고하기 위험한 범죄 상황에서 범인에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112문자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 전국에서 112로 보내는 문자는 모두 ○○지방경찰청 112서버로 전송된다. ○○지방경찰청은 해당 문자에 대한 위치정보를 기계적으로 자동조회하며, 이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는 해당 문자의 신고자 주변 기지국 값(CELL 방식¹⁾)을 ○○지방경찰청 112서버로 전송한다. ○○지방경찰청은 해당 기지국 값을 확인한 후 관할 지방청 112종합상황실에 배분하며, 관할 지방청은 지역관서로 지령한다.

5. 판단

1) 휴대전화가 접속한 기지국의 위치를 기반으로 위치 판단, 모든 휴대전화에 대해 사용 가능하며 실내·지하 등에서도 측위 가능, 수백m(도심지)~수km(개활지)의 위치오차 발생, 이와 비교되는 방법으로 GPS방식이 있으며 이는 인공위성을 통해 휴대전화에 내장된 GPS의 위치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정확한 측위가 가능하나, 휴대전화에 GPS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GPS를 꺼 놓은 경우, 건물내부, 지하 등에서는 측위 불가능

가. 판단기준

모든 사람은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공개와 유통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 즉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헌법 역시 이러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헌재 2005. 5. 26. 99헌마513 등)라고 하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 전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또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그 근거로 한다고 할 것이다.

개인위치정보는 “특정 개인의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이며, 이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함)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히 법률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그 수집·이용 또는 제공이 금지되는 것으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구체적인 내용 중 하나이다.

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진정인은 112문자신고를 하였을 뿐인데 경찰관서가 자신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조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먼저 112문자신고 시스템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찰청이 운영하는 112문자신고는 전국 어느 곳에서 발송하더라도 모두 ○○지방경찰청 112서버로 전송되며, 그 즉시 신고자 주변 기지국 값을 확인한 후 시스템을 통해 지방청을 경유하여 최근접 경찰관서로 배분하고 있다. 이는

긴급전화의 취지에 맞게 긴급출동 등의 조치를 위한 예비행위로서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이 규정하는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를 담당하는 경찰의 기본업무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12문자신고 시 신고사건의 최근접 경찰관서 배분을 위하여 기지국 위치정보 값을 자동으로 조회하는 행위가 명문의 법적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일부 지적은 일리가 있으나, 이는 위치정보법 개정 시 면밀한 검토를 필요로 하는 정책적인 사안이므로 그에 대한 검토는 별론으로 하기로 하고, 적어도 112문자신고가 있는 경우 최근접 경찰관서 배분을 위한 기계적인 기지국 값 조회는 음성에 의한 112신고와 같은 방식으로 긴급상황에 대응하고자 하는 경찰의 불가피한 조치로서 그것 자체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이 사건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문자신고를 배분받은 이후 실시한 위치추적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인정사실에 따르면 진정인은 2018. 6. 21. 08:09경 ‘담배냄새’를 이유로 제1차 112문자신고를 시작하여 같은 날 09:40경 ‘창문만 열면 냄새가 풍기는지 주시하며 훑쳐보는지 잡아달라는 내용’으로 제2차 신고를 하였고, 09:41경 ‘노상방뇨자를 잡아 달라’는 내용으로 제3차 신고, 09:56경 ‘협박고소 한 범인을 잡아 달라는 내용’으로 제4차 112문자 신고를 하였다. 한편, 피진정인은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진정인의 신고 중 제3차 신고부터 지령을 받고 순찰차에 출동지령을 하였으며, 진정인의 위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유로 같은 날 09:43경 및 09:44경 2차례 진정인에 대한 위치정보를 조회하였고, 이후 진정인의 추가 112문자신고가 10:04경 접수되자 제3차 위치정보를 조회하였다.

그런데 진정인의 신고내용은 단순 불편한 부분에 대한 민원사항 또는 기존 신고내용의 조속한 처리에 대한 촉구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치정보법 제29조제2항에서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진정인의 '개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험성 등'이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물론 표면상으로는 단순한 오타나 의미없는 숫자를 나열한 것에 불과해 보이는 112문자 신고가 실제로는 긴박한 상황에서 긴급구호를 요청하는 신고인 사례가 다수 있음을 감안하면, 문자신고 내용의 긴급성을 선불리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이 사건과 같이 단순민원 성격에 가까운 사안을 112로 신고하였음을 피진정인이 문자신고의 내용과 현장 출동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경우 진정인의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진정인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쳐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피진정인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진술내용에서 당시 상황이 긴급구조 혹은 신체·생명과 관련한 피해신고는 아니었으나, 신고자의 위치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불분명한 상황에서 긴급한 상황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여 왔고, 이에 대한 피해확산의 방지를 위하여 진정인의 위치를 추적한 행위가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이 최초 확인한 신고내용은 '노상방뇨자를 잡아 달라는 내용'으로 이러한 내용이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긴급한 상황을 야기할 만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며, 이에 따른 피해확산 역시 구체적으로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신고내용을 접한 후 해당 신고가 CODE-3(비긴급 신고)으로 분류된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신고자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정인의 위치를 추적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위치정보보호법 제29조 제2항에 반하는 행위로서 진정인의 개

인위치정보를 진정인의 동의 없이 활용한 것에 해당하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단, 이 사건 피진정인의 위치확인행위는 경찰의 112상황실 운영 관행과 관련된 것으로서 개인책임을 묻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경찰청장에게, 112문자신고에 따른 신고자 위치확인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없도록 전국 112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사례전파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위치추적 필요성 판단 및 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매뉴얼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9. 14.

위원장 최 영 애

위원 정 문 자

위원 이 상 철

위원 박 찬 운

위원 조 현 옥

위원 임 성 택

위원 김 민 호

위 원 문 순 회

위 원 이 준 일

위 원 서 미 화

위 원 석 원 정

<별 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치정보"라 함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한다.
2. "개인위치정보"라 함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개인위치정보주체"라 함은 개인위치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를 말한다.
4.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라 함은 위치정보의 수집요청인, 수집일시 및 수집방법에 관한 자료(위치정보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5.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라 함은 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자, 취득경로, 이용·제공일시 및 이용·제공방법에 관한 자료(위치정보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6. "위치정보사업"이라 함은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7.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이라 함은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이하 "위치기반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8. "위치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치정보를 수집·저장·분석·이용 및 제공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
2. 제29조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누구든지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치정보사업자들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물건을 대여하는 자는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대여받는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이하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개인위치정보주체의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

민법」 제928조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우자등은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긴급구조요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지방경찰청·경찰서(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라 경찰관서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자(이하 "목격자"라 한다)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으려면 목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자신 또는 다른 사람 등 구조가 필요한 사람(이하 "구조받을 사람"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를 요청한 자의 개인위치정보

2. 구조받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받을 사람의 개인위치정보

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이하 "실종아동등"이라 한다)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가 실종아동등에 대한 긴급구조를 요청한 경우 실종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다른 사람이 경찰관서에 구조를 요청한 경우 경찰관서는 구조받을 사람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요청은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을 위하여 부여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를 통한 호출에 한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개인위치정보주

체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의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긴급구조기관, 경찰관서 및 위치정보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통보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생명·신체에 대한 뚜렷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⑦ 긴급구조기관은 태풍, 호우, 화재, 화생방사고 등 재난 또는 재해의 위험지역에 위치한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경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경보발송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위험지역에 위치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경보발송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와 긴급구조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긴급구조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경찰관서는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수집된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확인, 열람, 복사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요청자
2. 요청 일시 및 목적
3.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내용
4.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제2항 단서에 한한다)

⑩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요청, 제3항에 따른 의사확인, 제7항

에 따른 경보발송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 2. 3.>

1.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긴급구조 활동을 위하여 불가피한 상황에서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에 제공하는 경우